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7
----------	-------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발의자 : 김기선 · 이명수 · 박덕흠  
추경호 · 함진규 · 원유철  
김도읍 · 정유섭 · 최연혜  
김정재 · 곽대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 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